#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34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이광재·박홍근·김영배

양향자 · 이상직 · 우원식

김주영 · 정일영 · 진성준

고용진 • 이원욱 • 홍익표

백혜련 · 김수흥 · 기동민

박성준 • 신영대 • 임호선

오영환 · 홍성국 · 유정주

윤영찬 · 강선우 · 이성만

황 희·박 정·홍기원

문정복・전재수・남인순

허 영·진선미·서영석

김경만 · 임종성 · 윤후덕

유건영 · 김승원 · 김두관

이용선 · 임오경 · 강병원

김용민 · 천준호 · 김원이

양정숙 • 이수진 • 이해식

민형배 의원(4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식의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 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 세 특례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2012년 일몰이 도래함으로써 폐지되었음.

그런데 최근 국내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여유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의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액면 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자 함(안 제91조의2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0(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소득에 대 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9조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 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집합투자기구"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집합투자기구별로 취득한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 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때 그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 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액 면가액 합계액이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별로 3억원을 초과 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부분의 소득에 대하여 「소 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 ②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에게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가 그 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보유자별·투자매매업자별·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한다.
- ③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회기 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그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 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7호 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를 통 하여 집합투자증권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 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사회기반시설 사업집합투자기구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 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제91조의20(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구 집합투자증권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라 하며,같은 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	현 행	개 정 안
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사 업집합투자기구별로 취득한 보 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때 그로부터 취득하		제91조의20(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소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라 하며,같은 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부터취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이경우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별로취득한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이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한 단기의 액면가액합계액이 3억

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부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 매매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 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자증개업자(이 하 "투자증개업자"라 한다)에게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 가 그 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집합 투자증권보유자별·투자매매업 자별·투자증개업자별 분리과세 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 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보 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 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 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 자기구는 직접 또는 그 사회기 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7항제7호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 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보유자 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사회기 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소 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소득

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